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1.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4년 9월 30일, 정부제출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1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2024.11.21.)

상정, 제안설명,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9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4.11.21.)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정부)

현행법에 따른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은 그 실적 등을 고려할 때 제도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인증 제도를 폐지하고, 인증 제도 폐지에 따른 도농교류 교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종전의 인증 대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거나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정된 도농교류 인증제도 폐지사항을 법률에 반영하여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인증제 폐지에 따라 종전에 인증제로 수행되는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시·도지사가 이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24년 9월 현재 인증 유지기관이 4개에 불과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 농림축산식품부령 등으로 인증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 등에 대한 고려에 따른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인증제를 두는 이유는 교육프로그램 배포기관 또는 교육과정 운영기관에 표준화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질과 일관성을 보장하고, 수강생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을 입을 고려할 때,

인증제 폐지는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과정의 질적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이에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적합성평가의 결과와 인증수요가 부족한 현실을 고려해 동 인증제를 폐지하더라도, 표준조례안을 마련하는 등 교육의 질 저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개정안은 부칙에서 인증 유효기간 및 교육프로그램 이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법률 시행일에 일괄적으로 잔여 유효기간을 모두 만료시키고 있는데,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자는 3년의 유효기간이 유지되리라는 기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경과조치로 인증에 따라 누리던 공신력 등 유·무형의 이익이 사라지는 것이 당사자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원택)

개정안의 내용을 대안에 반영하고,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